

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7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7. 19

다. 상 정 일 자 : 2002. 7. 19

(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주민자치과장 임 영 택

나. 개정사유

○ 주민자치설치및운영조례준칙개정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 됨에 따라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사 함.

다. 주요내용

- 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“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”를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“○○읍면주민자치센터, ○○주민자치센터”로 일화화 (안 제4조)
- ② 주민자치센터를 “지역문세 토문 등” 주민자치기능에 중점 (안 제5조)
- ③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를 “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 허용”으로 공무원 부담 완화 (안 제7조)
- ④ “사용료 등”은 “사용료”와 “수강료”로 통일하고 “사용료는 읍면장”이, “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”가 징수하고, “요율결정은 읍면장과 자치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”하는 등 징수, 관리체계 개선 (안 제10조)
- ⑤ 서소득자등 일정한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 근거 마련 (안 제10조)

- ⑥ “시설보험 등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(안 제11조)
- ⑦ 위원수를 “15-25인 이내”에서 “25인 이내”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3명 이내의 고문제도 신설 (안 제17조)
- ⑧ 주민자치위원을 읍면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어느 한 계층에서 1/3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하는 등 대표성 확보(안 제17조)
- ⑨ 위원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참여 기회 확대 (안 제17조)
- ⑩ 위원회는 심의, 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수강료의 장수 범위, 효율을 위원회가 의결, 집행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 역량제고 (안 제21조, 제2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개정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임.
- 당초 조례보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한 조례로 검토됨.
-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주민자치센터”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.
2. “단체”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, 직능·자생단체, 쿼니·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원칙) 주민자치센터(이하 “자치센터”라 한다)와 주민자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
1.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
2.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
3.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
4.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
5.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

제2장 주민자치센터

제4조(설치등)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

②자치센터의 명칭은 “○○읍면 주민자치센터” 또는 “○○주민자치센터”로 한다.

제5조(기능)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·복지·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문제 토론, 마을환경가꾸기,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
2. 지역문화 행사, 전시회,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
3. 건강증진, 마을문고,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

- 4. 회의장, 알뜰매장,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
- 5. 평생교육, 교양강좌,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
- 6. 내집앞 청소하기, 불우이웃돕기,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

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(이하 “시설 등”이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

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,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, 읍면사무소별 특성, 재정영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.

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, 임차한 건물, 기타 재정영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)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(이하 “자치센터의 운영”이라 한다)은 읍면장이 한다.

②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,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“수강료”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,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“수강료”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⑥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, 연구·개발, 협조·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별로 전문가, 관련분야 종사자, 시민·사회 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자원봉사자)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.

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,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9조(강사)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.

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료등)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로부터 사용료, 수강료 등(이하“사용료등”이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 중 “사용료”는 자치센터의 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, “수강료”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.

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“사용료”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, “수강료”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.

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⑤읍면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

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“수강료”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수입·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·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⑦읍면장은 “사용료”의 징수·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“수강료”의 징수·관리·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, “수강료”의 징수·관리·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.

제11조(이용등)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⑤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·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2조(주민참여)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)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보고) ①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읍면장은 제10호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장 주민자치위원회

제15조(설치)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.

제16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주민의 문화·복지·편익증진에 관한 사항
3.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
4.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.

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구성등) ①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되되,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식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.

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1.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, 이장대표,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·언론·문화·예술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.

2.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.

③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, 언론계, 문화·예술계, 관계, 경제계,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,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/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, 특히,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/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(지방의회 의원 포함)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

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,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직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.

⑥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 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·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8조(위원장의 직무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·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, 근무시간,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9조(간사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제20조(해촉) ①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1.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
2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- 3.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- 4. 자치센터의 운영취지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5.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.

제21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,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
⑤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제22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23조(실비보상등)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4조(시행규칙등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,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화순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